

2026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 감사대상 : 남동구 보건소
- 감사기간 : 2026. 6. 8. ~ 6. 12. (5일)
- 감사범위 : 2024년 4월 ~ 감사일(기관운영 사무 전반)
- 감사반원 : 감사총괄담당 외 4명
- 지적사항

행정상(건)			재정상(건/원)		신분상 (건/명)	기관경고
계	시정	주의	추징(회수)	추급(환급)		
8	4	4	1/779,350	-	1/1	-

2026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우수시책 및 미담사례]

1. 심폐소생술 체험 키오스크 운영

○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심폐소생술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기 간: 2025. 2월 ~
- 대 상: 보건소 내방객, 체험 희망자 등
- 내 용
 - 심폐소생술 교육 키오스크를 활용한 자율체험 학습 공간 마련
 - 흉부압박 실습 및 교육 영상 시청을 통한 반복 학습 지원
 - 체험 결과 기반 실시간 피드백으로 맞춤형 체험 학습 지원
- 예 산: 8,148천원(구100)

□ 추진실적

○ 2025년: 1,825명 참여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참여 인원(명)	17	147	319	417	193	223	150	100	81	104	74	1,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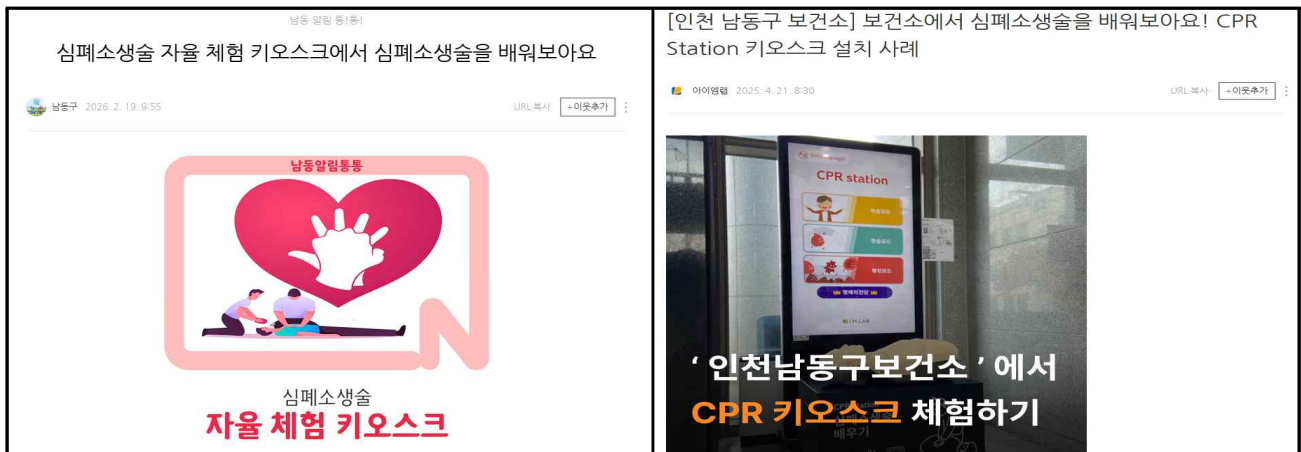
○ 2026년(4월 기준): 399명 참여

구분	1월	2월	3월	4월	계
참여 인원(명)	99	85	130	85	399

□ 기대효과

- 주민의 응급처치 관심도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 반복 체험을 통한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및 숙련도 향상
-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 활성화

□ 홍보사진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 무료 지원으로 면역력 강화 및 질병예방

□ 추진개요

- 대상 : 남동구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과거 접종자 제외)
- 기간 : 2023년 8월 ~ 2026년 12월
- 장소 : 지정 위탁의료기관 121개소
- 내용 :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 세부추진사항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
 - 자체사업 : (2023) 75세 이상 -> (2024) 70세 이상 -> (2025) 65세 이상
 - 시 보조사업 : 2024.3월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시행
- 남동구 1년 이상 거주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을 대상으로 과거 미접종자에 대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함(1회)
-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 시행, 백신 구매·공급 및 비용 상환 등 운영체계 구축함
- 추진실적 : 26,726명(2023년 3,638명, 2024년 10,660명, 2025년 10,747명, 2026년 1,681명)

□ 기대효과

-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접종률 향상
- 대상포진 발생 및 합병증 감소를 통한 어르신 건강증진
- 예방 중심 보건사업 확대를 통한 주민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

3.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 AI-IoT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허약 예방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6월 ~ 현재
- 사업대상 : 노쇠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남동구민
 - ※ 우선순위 선정기준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 사업내용 : 블루투스 건강측정기기와 오늘건강 앱(app)을 활용한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124,371천원(국50:시25:구25)

□ 세부추진계획

- (1 ~ 3월) 사전 준비 및 대상자 모집 · 선정
 - 모집 방법 : 관내 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업 홍보
 - 연도별 대상자 모집 인원(목표)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모집 인원	150명	300명	300명	400명

- (4 ~ 5월) 사전건강검사 및 건강측정기기 제공 · 교육
 - 신체계측 · 보행 · 평형성 평가
 - 건강행태 · 만성질환 현황 등 건강면접조사 실시
 - 허약평가 결과에 따른 건강군/전 허약군/허약군으로 군별 분류
 - 배부기준에 따른 디바이스 제공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화면형AI스피커
				
걷기 미션 대상자	저체중 또는 비만 대상자	고혈압 및 당뇨병이 있거나 정기적 측정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이 없거나 오늘건강 앱과 연동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

○ (4 ~ 10월) 건강측정 모니터링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보건의료시스템(PHIS)을 통한 대상자 건강측정 모니터링
- 오늘건강 앱(app) 미션 실천 유도 : 걷기, 혈압·혈당 측정하기 등

서비스 구분	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
미션	1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상
비대면 건강컨설팅	필요시	월 1회 이상	월 2회 이상
모니터링 및 지지 메시지	월 1회	주 1회	

○ (10 ~12월) 사후건강검사 및 만족도 조사, 사업 평가

- 사전 건강검사와 동일한 평가항목으로 대면 평가 실시
-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 기대효과

- 앱(app) 기반 대상자와 전문인력간의 1:1 맞춤형 건강상담 및 반복학습으로 건강 생활습관 개선 유도
-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복약관리·운동·식생활 개선의 동기 부여로 건강한 노후 생활 기대
- 독거노인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여 건강 사각지대 해소

4. 스마트어플 치매예방교실(맬리)

- 치매의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치매예방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 효과를 통해 치매 발병을 감소시키고자 함.

□ 추진개요

- 기 간 : 2024년 3월 ~ 2026년 현재
- 대 상 : 관내 스마트폰을 소지한 6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스마트 어플을 이용하여 다양한 두뇌훈련 프로그램 운영
 - 노인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감정조절 활동 운영
 -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유산소, 근력, 소근육, 스트레칭 등 운동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15,000천원(국80:시10:구10)

□ 세부추진계획

- (2026. 1.) (주)원메딕스인더스트리 계약 체결
- (2026. 1~9.) 홍보 및 대상자 모집
- (2026. 3~10.) 스마트어플 치매예방교실 운영
- (2026. 12.) 사업 평가 및 2027년도 사업운영 보완 및 계획

□ 기대효과

- 시공간 제약 없는 높은 접근성으로 비용 절감 기대
- 정보통신기술 적용을 통한 돌봄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5. 치매환자 보호자 월간간행물 지원사업

- 치매환자 간호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치매가족과 우울도가 높은 보호자에게 월간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함으로써 보호자의 심리적 지지를 도모

□ 추진개요

- 기 간 : 2025년 1월 ~ 2026년 현재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보호자 및 가족(기수별 50명)
- 내 용
 - 치매환자 보호자 자택으로 매월 좋은생각 간행물 발송
 - 분기별 치매사업 홍보지 혹은 위안의 글을 삽지 형태로 제작
 - 사업 전·후 우울도측정검사(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PHQ-9) 실시
- 소요예산 : 2,450천원(국80:시10:구10)

□ 세부추진계획

- (2024. 12.) (주)좋은생각사람들 업무협약 체결 및 대상자 모집
- (2025. 1.) 상반기 대상자 월간간행물 지원 시작
- (2025. 7.) 하반기 대상자 월간간행물 지원 시작
- (2025. 12.) (주)좋은생각사람들 업무협약 체결 및 대상자 모집
- (2026. 1.) 상반기 대상자 월간간행물 지원 시작
- (2026. 7.) 하반기 대상자 월간간행물 지원 시작
- (2026. 12.) 사후평가 및 만족도 조사

□ 기대효과

-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과 우울감 완화 도모
- 우편 발송 기반 비대면 가족지원사업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 기대

6. 전 직원 마음건강검사 밸런스워크 사업

-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이 증가하여 개인별 스트레스 수준 확인과 전문 상담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 자살률 상승 및 생명 경시 풍조 확산에 따라 조직 차원의 선제적 정신건강 보호 대응 필요성 대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 7. 22. ~ 2025. 9. 30.
- 사업대상 : 1,800여 명 (남동구청 전 직원)
- 사업내용
 - QR코드를 활용한 자가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검사 시행
 -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항목 고위험군 1:1 심층 상담
 - 고위험군 대상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개별 추적 관리
- 예 산 : 비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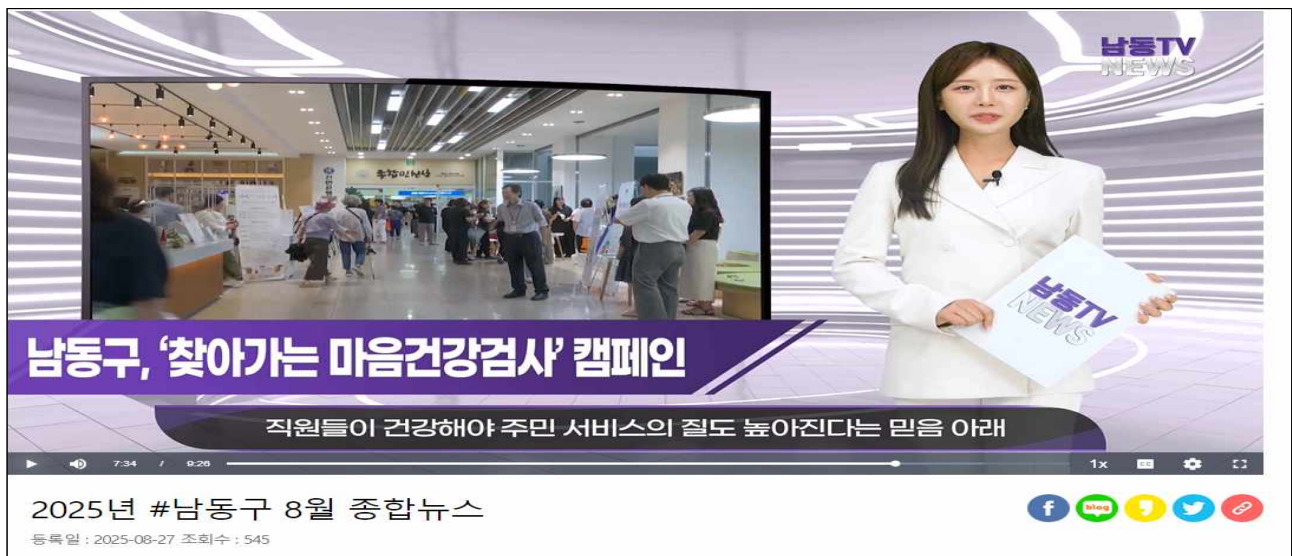
□ 세부추진내용

- 2025. 7. 18. : 2025년 밸런스워크 사업 계획 수립
- 2025. 7. 21. : 전 직원 검사 독려를 위한 협조 요청 및 홍보 실시
- 2025. 7. 22. ~ 2025. 8. 22. : 정신건강 검사 시행
- 2025. 8. 6. : 전 직원 대상 찾아가는 마음 건강 검사 및 홍보 캠페인 진행
- 2025. 8. 25. ~ 2025. 8. 29. : 상담 대상군 대면 상담 안내 및 예약
- 2025. 9. 1. ~ 2025. 9. 30. : 상담 대상군·희망자 유선 및 대면 상담

□ 기대효과

- 전 직원 대상 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및 우울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계를 통해 정신건강 악화 예방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
- 직장 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담 접근성 향상을 통해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및 생명존중 조직문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

□ 관련사진



7. 신바람 건강체조

- 양질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기 간 : 2024년 2월 ~ 2025년 11월
- 장 소 : 간석3동 석촌근린공원 체력단련장
- 대 상 : 지역주민 240명
- 예 산 : 비예산
- 내 용
 -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맨손체조 구성으로 신체활력 증진
 - 소도구를 이용한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및 관절가동 범위 향상
 - 워크온을 통한 출석인증 챌린지로 신바람 건강체조 참여 독려 및 홍보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법 제공으로 바람직한 생활습관 실천률 향상

□ 현장사진



2026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남 동 구

시 정 · 주 의 · 주 의 (주 의) 요 구

제 목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소관기관 남동구 보건소

조치기관 남동구 보건소

관계부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보건소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에 따라 특별휴가를 승인하며 사용하고 있다.

2. 육아시간 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24.7.2. 이전 - 5세이하의 자녀, 24개월 범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VIII. 휴가에 따르면 육아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보건소에서는 [표1]과 같이 육아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시간인 4시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연가로 처리하지 않고 육아시간으로 처리하여 부적정하게 승인·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1】 日 최소근무시간 미충족 및 육아시간 사용 현황 “생략”

3.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¹⁾까지를 유급으로 한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만 유급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보건소에 서는 [표1]과 같이 이를 초과하여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승인·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2】 유급 가족돌봄휴가 초과사용 현황 “생략”

4. 임신검진휴가 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12항에 따라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에 따라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한다.

이때,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남동구보건소에서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에도 [표1]과 같이 해당일에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휴가를 승인·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1】임신검진휴가 증빙서류 부적정 현황 “생략”

5. 육아지원휴가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남동구에서는 남동구 공무원 복무조례 제16조(특별휴가)에서 별도의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조례」제16조(특별휴가)제8항에 따르면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육아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자녀가 둘일 경우 연 10일, 셋 이상일 경우는 연 15일)의 범위에서 육아지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 산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자녀가 둘일 경우 연 10일, 셋 이상일 경우는 연 15일)의 육아지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육아지원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자녀의 연령 산정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남동구보건소에서는 [표1]과 같이 육아지원휴가 사용가능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가 없음에도 연령 확인을 소홀히 휴가를 승인·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1】육아지원휴가 부적정 사용 현황 “생략”

6. 장기재직휴가 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특별휴가) 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2024년 남동구 공무원 특별휴가 운영지침(총무과-39509(2024.10.17.))」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 사용기준(대상 및 분할사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휴가구분	재직기간	휴가일수	최대 분할 사용 횟수
새내기 휴가	1년이상 ~ 5년미만	5일	분할불가
장기재직휴가	5년이상 ~ 10년미만	10일	2회
	10년이상 ~ 20년미만	20일	4회
	20년이상 ~ 30년미만	25일	5회
	30년이상	30일	6회

※ 분할사용 시 1회당 5일 이상으로 사용일 수는 자유롭게 조정 / 일(日) 단위 사용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보건소에서는 특별휴가 운영지침의 재직기간별 ‘최대 분할 사용 횟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1]과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5일 미만으로 분할 승인·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1】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 현황 “생략”

7.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동구 보건소장은

(시정) 육아시간 부적정 사용자에 대하여 연가저축에서 *시간 차감하시기 바라며, 가족돌봄휴가 부적정 사용자에 대하여 연가저축에서 *시간 차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신검진휴가 부적정 사용자에 대하여 2024년 부적정 사용건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 **,***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2025년도 부적정 사용건은 *일 결근처리하시고 *일 결근에 따른 급여,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지원휴가 부적정 사용자에 대하여 2024년 연가보상비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시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검진휴가 부적정 사용자에 대하여

(주의)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실제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목적외로 사용하여 공무원으로써 지켜야할 성실의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합니다.

남 동 구

시 정 요 구

제 목 의료면허 · 의료기사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이행 관리 소홀

소관기관 남동구 보건소

조치기관 남동구 보건소

관계부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보건소는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이하 ‘의료 면허’, ‘의료기사 면허’라 한다) 보유를 자격요건으로 간호, 보건진료, 의료기술 등의 직렬에 특수직급²⁾으로 임용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 면허 및 의료기사 면허를 보유한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관계법령

「의료법」제25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와 「간호법³⁾」제1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의료인⁴⁾ 및 의료기사⁵⁾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

2)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별표 4]

-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조산사, 간호사 중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의료기술직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중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3) 2024. 9. 20. 제정, 2025. 6. 21. 시행되었음.

4) 「의료법」제1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포함함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정함.

부장관에게 신고(이하 ‘면허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 의료기사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 「간호법 시행규칙」제1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서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의료법 시행규칙」제20에 따르면 전공의, 의과대학·치과대학·한 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⁶⁾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며,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간호법 시행규칙」제12조(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에 따르면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6개월이상 법에 따른 간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의료기사의 경우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군 복무중인 사람,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요건⁷⁾을 갖춘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2020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보건복지부 지침, 2020년 2월) ‘의료인 보수교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면제 대상의 예로 ①외국에서 해당 면허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는 경우, ②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③군대에 사병(사회대체 복무도 포함)으로 의무복무 중인 자로 명시하고 있음.

7) 「2024년 의료기사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보건복지부 지침, 2024년 1월)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면제 대상의 예로 ①외국에서 해당 면허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또한 「의료법」제66조 제4항 및 「간호법」제40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면허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법」제65조 및 「간호법」제39조에 따르면 「의료법」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남동구보건소는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의료 면허 및 의료기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 신고 이행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 기간(20**.*.*~*.*.) 동안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의 면허 신고,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을 지연하여 이행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면허 신고 이행 지연

2026년 6월 기준 남동구보건소에 소속 되어있는 직원 중 의료면허 및 의료기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의 면허 신고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명의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가 2012년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이후 3년마다 하여야 하는 면허 신고를 20**.*.*.*.일 신고 후 *년 *개월이 지난 감사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1] 의료기사 면허 미신고 현황 “생략”

②해당연도 출산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예 대상의 예로는 ①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치료 중인 자, ②외국에서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로 명시하고 있음.

8)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1차 처분을 받고 2년 이내 다시 위반하여 2차 처분으로 자격정지 7일을 받는 경우에 해당함.

나. 보수교육 이수 소홀

또한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 중 *명은 보수교육의 유예·면제 신청을 지연하여 신청하거나, 유예·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연도에 유예·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을 수감일 현재까지도 미이수 하는 등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표 2] 의료인 및 의료기사 보수교육 미이행 현황 “생략”

위와 같이 남동구보건소의 일부 직원은 면허 신고 등을 소홀히 하여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태⁹⁾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면허 효력 정지 처분으로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고 있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동구 보건소장은

(시정)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 면허 및 의료기사 면허를 보유한 직원 중 면허 신고를 미이행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미신고 간호사 3,588명 면허 효력정지’ (의학신문, 2024. 2. 1.), ‘복지부, 면허 미신고자에게 행정처분 예고’ (한의학신문, 2022. 1. 6.) 등의 언론 보도를 통하여 보건복지부가 면허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 등이 보도된 바 있음.

남 동 구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소관기관 남동구 보건소

조치기관 남동구 보건소

관계부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보건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집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별표2의2]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본 훈령 제1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2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 항목 및 주기와 시기는 [별표2의2]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2의2] 공개방법에는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으로 구분하여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감사범위기간동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해왔으며, 20**년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대상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지출결의서에 미첨부하였다.

3. 지출원 변경 신용카드 관리 인수인계 부적정

가. 관계법령

- 같은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 보건행정과 외 2개 부서에서는 인사발령에 따라 지출원이 변경된 경우, 사용 중인 정부구매카드(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서면으로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급식비 대금 지급기한 지연

가. 관계법령

- 같은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별표4]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에 의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보건행정과에서는 급식비를 집행함에 있어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정당한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기한을 경과하여 지출하였다.

5. 지출증빙서류 첨부 소홀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에 따라 지출원은 지급명령을 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외 1개 부서에서는 지출증빙서류에 물품 구입 관련 승낙사항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또한 출장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월별출장 내역서를 누락하였다.

6. 공과금 납부 지연 및 가산금 예산지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 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외 1개 부서에서는 백신냉장고 통신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고, 발생한 연체가산금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7. 금연지도원 피복 등 수불관리 미비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산으로 물품(피복 등)을 구매하여 금연지도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구입 수량·배부내역·잔량 등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피복을 부서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급하면서 구입내역만 있을 뿐, 실제 지급 대상자 및 수령내역, 재고 관리 등 수불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8.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지방회계법」 제5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2항에는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의2] 8-5. 행사실비지원금 (301-11)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는 행사실비 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식비 단가는 특근매식비 기준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에서는 치매지원사업(세부사업) 추진 시 ‘**** 센터 이용자를 위한 간식 구입’ 과 같이 행사의 내용 및 참석자를 특정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대형마트에서 주기적으로 간식을 구입하는 등, 행사실비지원금의 집행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누락한 채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9.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동구 보건소장은

- (시정) 미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건의 증빙서류(집행대상)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업무 부적정

소관기관 남동구 보건소

조치기관 남동구 보건소

관계부서 보건행정과

내 용

1. 업무 개요

남동구 보건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소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건설공사 계약 부적정(압류금지 노무비 금액 미기재)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에서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며, 시행규칙 47조(계약서의 작성)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7~9호 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1호. 공사내용, 2호.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중략 …… , 18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1항에 따라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제2항에 근거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보건소에서는 감사범위 기간 중 체결한 3건의 건설공사 계약에서 도급계약서에 노무비(임금)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련법령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도급계약서(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상의 기재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 및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에 중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문제가 있다.

3. 계약상대자 자격 확인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을 참조한다.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분류번호	세부분류명		
80	경영관련 서비스	801419	전시회, 회의및행사 대행서비스	80141990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사 비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한 함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보건소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된 1천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갖추지 못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자격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동구 보건소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감독 업무 부적정

소관기관 남동구 보건소

조치기관 남동구 보건소

관계부서 보건행정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보건소는 청사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소 냉난방설비(냉온수기) 세관 청소 및 정비”, “보건소 청사 로비 천장 조명 및 화재감지기 교체” 등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제16조(감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도 위와 같다.

또한, 「남동구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제9조(검사조서의 작성)에 따라 현장감독관은 도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공사 계약에 대해 준공보고를 누락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동구 보건소장은

(주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동일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06]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안마시술소 변경 신고사항 소방서 통보 누락

소관기관 남동구 보건소

조치기관 남동구 보건소

관계부서 보건행정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의료법」 제82조 등에 따라 안마시술소 개설등록, 등록 사항 변경, 휴·폐·재개업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의5호에는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하고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표1]과 같이 안마시술소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 신고를 수리하였음에도 소방서 통보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1] 안마시술소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 신고 내역 "생략"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동구 보건소장은

(주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마시술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소독 의무대상 시설 관리 소홀

소관기관 남동구 보건소

조치기관 남동구 보건소

관계부서 보건행정과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독 의무대상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83조는 위 조항에 따라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남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표1]과 같이 점검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이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소독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및 사후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소독의무 대상시설 중 소독 미실시 시설 현황 "생략"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동구 보건소장은

(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의무대상 시설에 대하여 이행 독촉 및 필요한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소독 의무 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용 차량 관리 부적정[정비대장 관리]

소관기관 남동구 보건소

조치기관 남동구 보건소

관계부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남동구 보건소는 「남동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남동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3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차량배차신청서, 배차승인서, 유류수불부대장, 운행일지, 정비대장, 관리카드,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의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실정에 맞게 고쳐 사용하거나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공무용 차량 정비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미입력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남동구 보건소장은

(시정) 미입력된 공무용 차량 정비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적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동일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용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